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887호 2022. 11. 2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735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47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0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 15

거창군 고시 제2022-124호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16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563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5

거창군 공고 제2022-1579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 26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11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735호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라.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둬야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5. 고향사랑 기부금 계좌 우선 개설 및 예치·관리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제3조 답례품, 제8조 기금의 사용목적

나. 비용발생 요인

- 1)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비 지급
- 2)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가. 제도 시행 초기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미정

나. 예상 비용

1) 2022년 제2회 추경: 56,932천원

(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2천원

(나) 홍보비 28,000천원

2) 2023년 이후 예산

(가) 금액 미정

(나) 예산소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홍보비, 답례품 구입비, 배송비, 교육, 워크숍 운영비 등

작성자 행정과장 권해도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102
----------	----------

제출연월일	2022. 10. 1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정함(안 제2조~제6조)
- 나. 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 다. 고향사랑 기금의 목적, 기금운용관,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932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9. 13.~10. 4.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11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347호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우선 선정)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거창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등

**제3조(답례품비 예산편성)**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의 재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거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서면심의)**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이 경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2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2-65
----------	---------

제출연월일	2022. 11. 14.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수시로 변경가능 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우선 선정, 답례품비 예산편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고향사랑 기금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결산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 1)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서면심의, 간사, 의견청취, 운영 세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14.~11.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23.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3길 37-10 등 5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50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22-9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거창군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고제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 5,950백만원(국 4,165, 도 535, 군 1,250)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어울림센터조성, 어린이돌봄센터리모델링,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중심지가로 개선, 거창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8. 01. ~ 2022. 12.  
변경 2018. 01. ~ 2023. 06.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 개발담당(☎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6)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토지》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어울림 센터	1	고제	농산	748	1	답	878	878	거창군		수용
	2	고제	농산	748	2	답	787	787	거창군		수용
	3	고제	농산	755	3	답	78	16	거창군		수용
	4	고제	농산	1855	12	답	10	10	거창군		수용
	5	고제	농산	1855	13	답	23	11	거창군		수용
	6	고제	농산	1855	14	전	7	7	거창군		수용
	7	고제	농산	758	3	답	36	36	거창군		수용
	8	고제	농산	1855	17	답	95	42	거창군		수용
	9	고제	농산	1855	18	답	17	17	거창군		수용
	10	고제	농산	747		답	119	119	거창군		수용
	11	고제	농산	750	6	창	191	191	거창군		수용
마을안길 정비사업	12	고제	농산	201	4	도	544	217	국(건설부)		사용
	13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393	국(건설부)		사용
	14	고제	농산	1855	8	구	25	1	국(농림수산부)		사용
	15	고제	농산	1871		도	754	87	국(건설부)		사용
	16	고제	농산	781	1	도	203	5	국(건설부)		사용
	17	고제	농산	754	7	도	1,165	53	국(건설부)		사용
	18	고제	농산	746	3	도	111	7	국(건설부)		사용
	19	고제	농산	1856		도	998	356	국(건설부)		사용
	20	고제	농산	753	4	대	1,266	6	국(경찰청)		사용
	21	고제	농산	1856	1	대	231	0.02	국(건설부)		사용
	22	고제	농산	1855	7	도	21	10	국(건설부)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 정비사업	23	고제	농산	188	8	도	1,458	0.20	국(건설부)		사용
	24	고제	농산	186	7	도	78	12	국(건설부)		사용
	25	고제	농산	1851	3	구	441	8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26	고제	농산	1861		도	312	238	국(건설부)		사용
	27	고제	농산	1857		구	194	90	국(농림수산부)		사용
	28	고제	농산	207	1	대	109	1.00	국(기획재정부)		사용
	29	고제	농산	213		구	6,176	202	국(농림수산부)		사용
	30	고제	농산	1876		구	632	69	국(농림수산부)		사용
	31	고제	농산	1876	2	구	70	67	국(농림수산부)		사용
	32	고제	농산	1880		도	108	45	국(건설부)		사용
	33	고제	농산	1879		도	99	8	국(건설부)		사용
	34	고제	농산	1875		도	827	86	국(건설부)		사용
	35	고제	농산	200	5	대	136	117	거창군		사용
	36	고제	농산	1854	7	대	36	1	거창군		사용
	37	고제	농산	200	9	대	40	25	거창군		사용
	38	고제	농산	1854	8	대	26	6	거창군		사용
	39	고제	농산	1855	5	대	22	1	거창군		사용
	40	고제	농산	251	1	대	150	150	거창군		사용
	41	고제	농산	201	5	대	41	37	거창군		사용
	42	고제	농산	184	3	학	152	5	거창군		사용
	43	고제	농산	252		체	2,009	81	거창군		사용
	44	고제	농산	253		전	1,512	58	거창군		사용
	45	고제	농산	254		창	392	77	거창군		사용
	46	고제	농산	680	2	도	20	12	거창군		사용
	47	고제	농산	산93	1	도	49	12	거창군		사용
	48	고제	농산	산92	2	도	64	25	거창군		사용
	49	고제	농산	산92	1	도	30	2	거창군		사용
	50	고제	농산	682	2	도	73	45	거창군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 정비사업	51	고제	농산	702	2	도	152	55	거창군		사용
	52	고제	농산	686	2	도	83	65	거창군		사용
	53	고제	농산	702	4	도	4	1	거창군		사용
	54	고제	농산	704	4	도	16	12	거창군		사용
	55	고제	농산	687	2	도	60	16	거창군		사용
	56	고제	농산	687	6	도	3	3	거창군		사용
	57	고제	농산	687	8	도	27	9	거창군		사용
	58	고제	농산	687	9	도	32	24	거창군		사용
	59	고제	농산	690	1	도	54	9	거창군		사용
	60	고제	농산	208	1	대	536	5	대○○○○○○○ 회(고신)총회유지 재단		사용
	61	고제	농산	211		대	208	9	대○○○○○○○ 회(고신)총회유지 재단		사용
	62	고제	농산	211	1	대	67	0.1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3	고제	농산	208	3	대	327	6	대○○○○○○○ 회(고신)총회유지 재단		사용
	64	고제	농산	208	5	대	49	4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5	고제	농산	208	4	도	150	10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6	고제	농산	208	6	차	49	3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7	고제	농산	690		답	105	36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68	고제	농산	786		대	284	22	이○영 외 3인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사용
	69	고제	농산	785		대	192	18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사용
	70	고제	농산	787		대	152	1	이○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사용
	71	고제	농산	783		대	351	33	박○래		사용
	72	고제	농산	759	6	답	268	84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19번길	사용
	73	고제	농산	759	7	도	56	1	배○주		사용
	74	고제	농산	779		답	268	84	이○두	경남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사용
	75	고제	농산	780		대	291	63	이○순		사용
	76	고제	농산	772	2	답	668	50	배○주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마을안길정비사업	77	고제	농산	773	3	답	780	55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19번길	사용
	78	고제	농산	777		대	651	26	성○화	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19번길	사용
	79	고제	농산	775		대	347	12	유○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사용
	80	고제	농산	784		대	317	1	이○영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사용
	81	고제	농산	746	1	도	205	15	진○이		사용
	82	고제	농산	746	4	답	226	59	류○성		사용
	83	고제	농산	746	2	대	394	3	류○성	거창읍 상림리	사용
	84	고제	농산	산12	1	임	15,273	20	전○탁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사용
	85	고제	농산	산10		임	146,876	192	덕수이씨덕온종중		사용
	86	고제	농산	178		전	2,102	0.3	이○이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278번길	사용
	87	고제	농산	205	1	대	145	4	박○규		사용
	88	고제	농산	1861	1	대	61	0.4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사용
	89	고제	농산	209		대	60	10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사용
	90	고제	농산	산95	5	도	384	276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91	고제	농산	680	1	전	76	64	박○화		사용
	92	고제	농산	산95	4	도	86	58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93	고제	농산	산95	35	임	3,255	14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94	고제	농산	산95	1	임	9,368	54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95	고제	농산	682	1	대	367	82	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사용
	96	고제	농산	686	3	대	304	7	김○영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용
97	고제	농산	702	3	답	30	27	박○원		사용	
98	고제	농산	703	4	도	12	9	백○흠		사용	
99	고제	농산	703	2	도	43	9	백○흠		사용	
마을안길정비사업	100	고제	농산	704	3	도	10	5	이○복		사용
	101	고제	농산	산95	6	도	163	100	류○철	전남 광주시 학동 1구	사용
	102	고제	농산	687	5	답	223	47	강○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용
	103	고제	농산	689		대	450	55	강○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04	고제	농산	688	3	대	304	29	유○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사용
	105	고제	농산	705	1	임	307	52	이○존	거창읍 상림리 367-3	사용
	106	고제	농산	687	1	대	50	9	이○만		사용
	107	고제	농산	201	2	도	155	21	미등기		사용
	108	고제	농산	200	2	도	469	52	미등기		사용
	109	고제	농산	251	2	도	251	57	미등기		사용
	110	고제	농산	200	4	도	36	8	미등기		사용
	111	고제	농산	745		답	119	2	미등기		사용
	112	고제	농산	752	1	대	162	17	미등기		사용
	113	고제	농산	752	2	도	17	5	미등기		사용
	114	고제	농산	204	2	도	109	46	미등기		사용
	115	고제	농산	203	5	도	307	125	미등기		사용
	116	고제	농산	203	3	도	63	17	미등기		사용
	117	고제	농산	203	7	도	327	200	미등기		사용
	118	고제	농산	202	2	도	248	137	미등기		사용
	119	고제	농산	188	3	도	205	53	미등기		사용
	120	고제	농산	188	10	도	616	0.4	미등기		사용
	121	고제	농산	687	7	도	137	73	미등기		사용
	122	고제	농산	706		대	112	24	미등기		사용
	123	고제	농산	688	1	대	7	4	미등기		사용
중심지가로	125	고제	농산	233	3	임	883	58	미등기		수용
	126	고제	농산	232	2	도	235	34	미등기		수용
	127	고제	농산	231	2	도	754	97	미등기		수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개선사업	128	고제	농산	224	2	도	1,031	113	미등기		수용
	129	고제	농산	1935		구	1,626	9	국(농림수산부)		사용
	130	고제	농산	250	4	도	489	73	미등기		수용
	131	고제	농산	249	8	도	579	19	국(건설부)		사용
	132	고제	농산	250	3	도	13	3	박○일		수용
	133	고제	농산	249	4	도	714	84	미등기		수용
	134	고제	농산	250	2	도	13	4	미등기		수용
	135	고제	농산	1851	3	구	441	1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36	고제	농산	188	5	도	73	2	미등기		수용
	137	고제	농산	188	10	도	616	96	미등기		수용
	138	고제	농산	188	3	도	205	3	미등기		수용
	139	고제	농산	188	8	도	1,458	85	국(건설부)		사용
	140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62	국(건설부)		사용
	141	고제	농산	746	1	도	205	40	진○이		수용
	142	고제	농산	1856		도	998	2	국(건설부)		사용
	143	고제	농산	1855	19	구	1,856	12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44	고제	농산	742	1	도	255	26	거창군		사용
	145	고제	농산	789	2	도	122	14	김○옥	궁항리	수용
	146	고제	농산	790	3	도	86	19	미등기		수용
	147	고제	농산	790	4	답	36	1	유○옥	부산진구 백양대로 260번길	수용
148	고제	농산	791	2	도	79	5	미등기		수용	
149	고제	농산	791	3	도	7	6	국(건설부)		사용	
중심지 가로 개선	150	고제	농산	740	2	도	231	11	미등기		수용
	151	고제	농산	796	3	도	53	9	국(건설부)		사용
	152	고제	농산	796	2	도	486	29	미등기		수용
	153	고제	농산	737	1	도	409	76	국(건설부)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사업	154	고제	농산	746	3	도	111	4	국(건설부)		사용
	155	고제	농산	745		답	119	11	미등기		수용
	156	고제	농산	744		답	86	15	미등기		수용
	157	고제	농산	1856		도	998	2	국(건설부)		사용
	158	고제	농산	1855	19	구	1,856	17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59	고제	농산	743		대	83	24	미등기		수용
	160	고제	농산	742	6	답	41	10	이○택	개명리	사용
	161	고제	농산	742	5	답	350	50	이○주	농산리	사용
	162	고제	농산	1873		도	423	60	국(건설부)		사용
	163	고제	농산	742	2	답	135	9	이○주	배재로	사용
	164	고제	농산	741		답	126	34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5	고제	농산	741	1	답	56	9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6	고제	농산	1873	1	도	21	5	국(건설부)		사용
	167	고제	농산	1855	29	구	69	6	국(농림축산식품부)		사용
	168	고제	농산	740	7	답	144	11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69	고제	농산	739		답	374	29	김○영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수용
	170	고제	농산	737		답	1,818	25	이○노	농산리	수용
	171	고제	농산	1872		도	446	144	국(기재부)		당초 수용
	171	고제	농산	1872		도	446	446	국(기재부)		변경 수용
	172	고제	농산	737	2	답	211	5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거창지수	173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31	국(건설부)		사용
	174	고제	농산	1212	1	도	1,703	27	국(국토교통부)		사용

공종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지	175	고제	농산	1208	2	도	66	3	거창군		사용
	176	고제	농산	1208	3	도	7	1	거창군		사용
	177	고제	농산	1901		구	1,342	2	국(기획재정부)		사용
	178	고제	농산	1905		도	443	2	국(건설부)		사용
	179	고제	농산	1195	7	도	17	2	거창군		사용
	180	고제	농산	1208	1	답	867	3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1	고제	농산	1207	1	답	1,291	34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2	고제	농산	1206	1	전	63	20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3	고제	농산	122	3	임	3,414	28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4	고제	농산	124	2	임	1,577	58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185	고제	농산	124	6	도	201	5	국(건설교통부)		사용
	186	고제	농산	124	5	도	3,088	10	국(건설교통부)		사용
	187	고제	농산	1189	3	도	5,015	211	국(건설교통부)		사용
	188	고제	농산	197	6	도	236	15	국(건설교통부)		사용
	189	고제	농산	1185	1	도	163	7	국(건설교통부)		사용
	190	고제	농산	1195	1	답	825	67	한국농어촌공사		사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고제	농산	753	10	대	308	308	고제면입석마을회	
돌봄센터 리모델링		고제	농산	757	5	답	329.4	329.4	거창군		사용
계								11,028.82			
계								11,330.82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 거창군수

- 공고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11. 18. ~ 2022. 12. 5. (18일간)
-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나. 신청기간 : 2022. 12. 30.까지
  - 다.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신청가능
  - 라. 제출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분증(운전면허증), 수수료 2,500원
    -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1매 (3.5cm×4.5cm)
    - 신체검사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마. 과태료 등 벌칙사항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과태료에 더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 건설과(055-940-3534)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우리 시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 거 창 군 수

1. 공고기간: 2022. 11. 21. ~ 12. 15.(25일간)
2. 공고대상: 2대(붙임 참고)
3. 운행정지명령 등록 일자 : 2022. 12. 16.이후
4. 공고내용

가.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예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가 되며, 운행정지 이후 공고 대상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번호판 영치, 같은 법 제82조제2의2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295)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1	37더7518	KA*TI*H S*D ED**N
2	10무0487	